전자근로계약서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

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여 당사자 간 분쟁을 예방하고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함이 중요하며, 이를 위한 첫걸음이바로 근로계약서 작성이다. 그러나 산업 현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비율은 약 60%에 불과한 실정이다.

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IT 기술을 바탕으로 한 전자근로계약서 방식이 작성과 보존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근로계약서 작성률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.

다만, 전자근로계약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서면근로계약서와 같은 수준의 안정성·신뢰성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바,

이에 정부는 「근로기준법」,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」등 관련 법령을 토대로 전자근로계약서의 작성·교부·보존에 관한 가이드 라인을 마련함으로써 노동시장 전반에 합리적이고 투명한 근로계약 체결 문화와 관행이 확산되도록 하고자 한다.

- I. 이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하여 「근로기준법」(이하 '법'이라 한다)과 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」(이하 '전자문서법' 이라 한다)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.
- 1. "전자근로계약서"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는 출력이 즉시 가능한 전자문서를 말한다.
- 2. "전자문서"란 전자문서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, 송신·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.
- 3. "정보처리시스템"이란 전자문서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전자문서의 작성·변환, 송신·수신 또는 저장을 위하여 이용되는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를 말한다.
- Ⅱ. 사용자와 근로자는 전자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.
 - 1. 전자문서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서도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다.

2. 전자근로계약서는 PC, 스마트폰 등 정보처리시스템 상 전자문서 생성 전용프로그램(혼글, 오피스, 웹 에디터, PDF 등)이나 전자근로 계약서 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별도로 마련한 정보처리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.

-【전자근로계약서 작성으로 인정되는 경우 예시】—

- 사내전산망, 인터넷 구인·구직 사이트 등에 마련된 근로계약서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
- 수기(手技), 훈글 프로그램 등으로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PDF, 사진 파일 등으로 전자화하여 저장(전자화문서)
- 3. 사용자, 인터넷 구인·구직사이트 운영자 등이 전자근로계약서 작성을 지원하는 정보처리시스템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스템을 통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·확인·수정할 수 있고, 작성된 전자근로계약서가 계약 당사자들에게 자동으로 배포되어 열람·출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.
- 4. 사용자와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할 의무가 있으므로 전자근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도 다음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.
 - 가. 임금(임금의 구성항목 · 계산방법 · 지급방법을 포함한다)
 - 나. 소정근로시간
 - 다. 법 제55조에 따른 휴일
 - 라.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
 - 마.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
 - 바.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

- 4-1. 사용자가 근로자와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전자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「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에 관한 법률」제17조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전자근로계약서에 모두 명시하여야 한다.
 - 가.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
 - 나. 근로시간 휴게,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
 - 다. 임금의 구성항목 ·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
 - 라.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
 - 마.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(단시간 근로자에 한함)
- 5. 전자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사용자와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관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가급적 당사자의 서명을 포함한 문서를 전자화하거나 「전자서명법」에 의한 전자서명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써 해당 계약 당사자 쌍방의 의사가 합치하여 전자근로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.
- 6. 전자근로계약서는 최종 작성 또는 서명 이후에 어느 일방이 임의로 수정할 수 없도록 가급적 읽기전용문서*로 저장하여야 한다. 전자근로계약서 작성을 지원하는 정보처리시스템을 마련하는 경우계약 당사자 일방이 서명 이후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수정하면 상대당사자가 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장치**를 마련하여야 한다.
 - * 읽기전용 PDF 파일, 배포용 HWP 문서, 이미지 파일(JPG,TIF 등) 등
 - ** 파일의 내용과 크기 등에 따라 고유의 값을 갖게 되는 해시 값(MD5) 생성 (근로계약서 작성프로그램에 내장 또는 문서파일에 대해 생성 가능), DRM·워터마크 도입(근로계약서 작성프로그램에 내장) 등

- Ⅲ. 사용자는 작성된 전자근로계약서를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, 근로자가 자신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하여야 한다.
 - 1. 전자근로계약서를 교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.
 - 가. 전자근로계약서를 종이로 출력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전달
 - 나. 전자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자동으로 송·수신되도록 구축된 정보처리시스템, 사내전산망의 정보처리시스템, 근로자가 지정한 소프트웨어 및 이에 부속한 저장공간(애플리케이션), 전자문서법에 따른 공인전자주소('샵메일'), 포털사이트 등에서 제공하는 이메일 등 각종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여 근로자에게 전송
 - 2. 사용자가 전자적 방법으로 근로계약서를 교부한 경우 교부의무를 이행하였는지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판단한다.
 - 가. 근로자가 전자근로계약서를 수신할 정보처리시스템을 지정한 경우
 - (1) 근로자가 전자근로계약서를 수신할 정보처리시스템을 지정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해당 정보처리시스템에 전자근로계약서를 입력한 때*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(참조: 전자문서법 제6조제2항제1호본문).
 - * 해당 정보처리시스템 서버에 전자근로계약서가 수신된 때를 말함
 - (2) 사용자가 근로자가 지정한 정보처리시스템이 아닌 다른 정보 처리시스템에 입력한 경우에도 근로자가 이를 확인하여 출력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다(참조: 전자 문서법 제6조제2항제1호단서).

- 나. 근로자가 전자근로계약서를 수신할 정보처리시스템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
 - (1) 근로자가 전자근로계약서를 수신할 정보처리시스템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용자가 근로자가 관리하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한 때*에는 근로계약서를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다(참조: 전자문서법 제6조제2항제2호). 다만,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받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.
 - * 해당 정보처리시스템 서버에 전자근로계약서가 수신된 때를 말함
- 다.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면서 근로자가 수신을 확인할 것을 조건으로 한 경우
 - (1) 사용자가 이메일 등 전자적 방법으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면서 근로자가 수신을 확인할 것을 조건으로 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수신확인 통지를 받은 때 근로계약서를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다(참조: 전자문서법 제9조제1항).
- Ⅳ.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교부한 전자근로계약서를 법 제42조 및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동안 뿐 아니라 근로관계 종료 후에도 3년까지 보존하여야 한다.
 - 1. 사용자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 전자근로계약서를 보관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보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(참조: 전자문서법 제5조).

- 가. 전자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을 것
- 나. 전자근로계약서가 작성 및 송신·수신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
- 다. 전자근로계약서의 작성자, 수신자 및 송신·수신 일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보존되어 있을 것
- 라. 종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 등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않은 근로계약서를 PDF, 사진 파일 등으로 전자화하는 등 정보처리 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위 요건에 더하여 근로계약서 원본과 내용 및 형태가 동일할 것
 - * 전자화 과정에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문서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시한「전자화문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」을 준수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